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O 제출일자 : 2017년 8월 21일

O 회부일자 : 2017년 8월 24일

3. 개정이유

O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정비조합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 고자 함

4. 주요내용

- 정비구역 등의 해제요건 신설 (안 제4조의2)
-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미선임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 신설 (안 제13조의2)
-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방법, 시기 등 신설 (안 제30조의2)

4. 검토의견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내

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정비구역 해제 요건을 신설하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미선임될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방법 및 시기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비구역 해제 요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정비사업 정보공개 방법 및시기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장기방치된 정비사업 운영을 위한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및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대를 위해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됨.

붙임 :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